

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중 “1천억원”을 “5천억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)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.
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.

별표7에 제1의2호 및 제21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1의2.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 해당 사실 보고의 접수

21의2.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초과 사실 보고의 접수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 및 별표7 제21의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금융업의 범위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"이란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<u>1천억원</u> 이상일 것을 말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금융업의 범위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5천억원</u> ----- -.</p> <p><u>제10조의2(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)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.</u></p> <p><u>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.</u></p>